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4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3

1 ()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3 ()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 2. 13., 2021. 6. 22.>

-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4 ()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5 ()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

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1. 1. 5.>

1.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2. 13.>

6 ()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1. 6. 22.>
- [제목개정 2021. 6. 22.]

6 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3.]

7 ()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량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2. 1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8 ()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9 ()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11 ()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13.>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2 (· 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3 (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3.>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2. 13.>
- ⑤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2. 13.>

14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5. 6. 30., 2016. 5. 31., 2021. 6.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마. 「주택도시보증공사」
 - 바.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법 제1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굴착허가일부터 온천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4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21. 6. 22.]

14 3()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대집행의 통지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해야 한다.
 - ⑥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은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6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6. 22.]

15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16 (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2. 13.>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17 (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

[본조신설 2020. 6. 23.]

21 ()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외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2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6. 22.>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13.>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3.>

23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1.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7. 7. 26., 2021. 3. 2.>

1.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24 ()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31804호, 2021. 6. 22.>

1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1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기간 연장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4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